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檢 討 報 告 書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3.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429호로 2021년 12월 8일 유승용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록포결 도입과 회의록의 공개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안의 제출·발의 조문 삭제(안 제10조 삭제)

나. 기록포결제 도입 및 회의록 공개 (안 제38조, 안 제46조)

다. 의장의 위원회 출석발언 규정 (안 제52조의2)

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 주민조례청구안 심사 절차 (안 제57조)

-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안 제57조의2)

-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안 제57조의3)

마.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72조의2)

바. 그 밖에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39조, 안 제6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생략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른 기록표결 도입과 회의록의 공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 관련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2021.1.12. 전부개정, 2022.1.13. 시행)의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1.10.19. 제정, 2022.1.13. 시행)을 제정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는 의안의 제출·발의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법 제66조에 따라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의원으로 규정되었으나, 개정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에 4명 이상으로 의안 발의 정족수를 정하고 관련 내용을 이관하였으며, 개정 규칙안에서는 조문을 삭제하였음.

현 행 법	개 정 법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 ⑤ 생략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 ⑤ 생략

- 안 제38조는 표결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법에서 본회의의 표결 방식을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기록표결(투표자 및 찬성의원과 반대위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표결)로 하고 단서조항으로 의장·부의장 선거, 불신임 의결, 의원 자격 상실 의결, 징계 의결 및 지방의회에서 하는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예외사항으로 무기명투표를 하도록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음.

현행법	개정법
<신설>	<p>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7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 안 제52조의2는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법 제50조에 규정하고 있던 것이 삭제된 것으로 권고안에 따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였음.

현행법	개정법
제50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삭제>

- 안 제57조부터 제57조의3까지는 주민청구조례의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 수리 및 각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2.1.13. 시행)
<p>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p>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① 지방의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안 제72조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개정 법에서

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
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
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일에 맞춰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강화를 위한 기록 표결 도입과 회의록 공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주민조례 발안 절차 규정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 적기에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